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 미실시

관계기관 일산중학교

내 용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[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],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[학교안전계획 수립·평가의 내실화]에서 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3월 중 「학교안전계획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일산중학교에서는 아래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일산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3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2020학년도 과학실험 안전관리 소홀

관계기관 일산중학교

내 용

「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」(과학실험시리 안전관리 체제강화, 교직원 실험 안전교육 역량 강화)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 6(안전점검의 날 등),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(교직원 실험 안전교육 역량 강화),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 제141조, 제143조, 제170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), 「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」(과학실험실 안전한 환경 조성)에는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 유해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밀폐시약장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도, 일산중학교에서는 2020년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부결재가 누락되었고, 교직원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,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일산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2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